

[별표 5] <개정 2002.12.2.>

안내판 및 표주(제17조제1항관련)

1. 안내판

가. 규격

재질 : 스텐레스 스틸 등 부식에 강하고 견고한 재질

바탕색 및 글씨 : 청색바탕에 흰색글씨 또는 흰색바탕에 청색글씨

나. 내용문안

1) 앞면(글자 배열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입니다.

(신고 및 문의처)

○○도·시·군·구 ○○○과

전화번호 : ○○○-○○○○

2) 뒷면

알림

1. 이 지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금지행위)

(1)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2)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3)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4)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3)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표주

